

법무사자격인정심사위원회내규 일부개정내규안

1. 개정이유

-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두도록 「법원조직법」(법률 제17125호, 2021. 2. 9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, 위원회 회의 및 서면의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중 윤리감사관을 행정관리실장으로 변경함
(안 제3조제1항)
-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변경함
(안 제6조제1항)
- 위원장은 서면의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결사항에 대하여 서면의결에 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함(안 제7조)

3. 법무사자격인정심사위원회내규 일부개정내규안

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법무사자격인정심사위원회내규 일부개정내규안

법무사자격인정심사위원회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윤리감사관”을 “행정관리실장”으로, “행정관리실장, 사법등기국장”을 “사법등기국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서면 의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주무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의 서면의결에 부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)</p> <p>① 위원회의 구성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장, <u>윤리감사관을 부위원장</u>으로 하고, 법원행정처 <u>행정관리실장</u>, <u>사법등기국장</u>, 재판사무국장 및 대한법무사협회가 추천하는 1인을 위원으로 하며, 위원 중 <u>사법등기국장을 주무위원</u>으로 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3조(구성)</p> <p>① ----- ----- <u>행정관리실장</u>----- ----- <u>사법등기국장</u>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 (회의)</p> <p>① <u>위원장은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 자격인정심사를 안건에 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② ~ ⑥ (생략)</p>	<p>제6조 (회의)</p> <p>① <u>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</u></p> <p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 (서면의결)</p> <p><u>위원장은 신청자가 「법무사법」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로서의 경력요건을 갖춘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고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무위원의 의견을 들어 자격인정심사를 위원회의 서면의결에 부할</u></p>	<p>제7조 (서면의결)</p> <p><u>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서면의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주무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의 서면의결에 부할 수 있다.</u></p>

수 있다.

1. 형사처벌 및 공무원으로 재직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2. 공무원으로 재직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강등·정직을 받고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8월이 경과된 자
3. 공무원으로 재직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감봉을 받고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2월이 경과된 자
4. 공무원으로 재직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견책을 받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자
5. 공무원으로 재직중 직무상 비위 사실이 아닌 다른 사유로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자 중 사안이 경미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자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	
연락처	(02) 3480-1394